왕립장애위원회(Disability Royal Commission) 조사에 대한 호주 정부의 대응 요약

Korean | 한국어

2024년 7월

**저작권 고지**



본 문서, *'왕립장애위원회(Disability Royal Commission) 조사에 대한 호주 정부의 대응 요약'*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legalcode)

라이선스 URL: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legalcode>

출처 표시: © Commonwealth of Austral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http://www.dss.gov.au)) 2024

**공지:**

* 이 문서의 파생 자료를 만드는 경우,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는 해당 파생 자료에 다음 공지를 게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호주 연방(사회복지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 본 라이선스 또는 이 문서의 다른 사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문의 연락처: Branch Manager, Communication Services Branch,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전화: 1300 653 227. 이메일: [communication@dss.gov.au](mailto:communication@dss.gov.au)

**이 간행물의 다른 자료 또는 권리를 식별하는 공지:**

* 호주연방 문장(Australian Commonwealth Coat of Arms)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하에서 라이선스가 부여되지 않음, 참조 <https://www.pmc.gov.au/honours-and-symbols/commonwealth-coat-arms>
* 특정 이미지 및 사진(표시된 대로)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하에서 라이선스가 부여되지 않음.

목차

[지원 서비스 1](#_Toc173150774)

[머리말 4](#_Toc173150775)

[대응 요약 7](#_Toc173150776)

[호주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협의 및 참여 9](#_Toc173150777)

[장애 개혁에 대한 호주 정부 정책 성명 12](#_Toc173150778)

[투자 및 실행 개요 14](#_Toc173150779)

[권고안에 대한 입장 23](#_Toc173150780)

원주민 인정문

호주 정부는 우리가 모이고, 생활하고, 일하는 호주 전역의 전통적인 소유자들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모든 전통적 관리인 및 그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원로들을 인정하며 그들의 문화, 지역 사회, 땅, 바다 및 물에 대한 지속적인 연계에 경의를 표합니다.

간행물 내용에 대한 경고

이 간행물에는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폭력, 학대, 방치 및 착취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원 서비스

**전국 장애인 학대 및 방치 핫라인: 1800 880 052**

전국 장애인 학대 및 방치 핫라인(National Disability Abuse and Neglect Hotline)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방치를 신고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핫라인은 신고자와 협력하여 의뢰, 정보 및 지원을 통해 학대 또는 방치 신고를 처리하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1800RESPECT: 전화 1800 737 732, 문자 0458 737 732**

1800 RESPECT는 가정 폭력, 가족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호주의 전국적인 상담, 정보 및 지원 서비스입니다. 하루 24시간, 주 7일 이용 가능합니다.

**장애인 옹호 지원 헬프라인(Disability Advocacy Support Helpline): 1800 643 787**

장애인 옹호 지원 헬프라인(이하 헬프라인)은 *호주 장애 전략 2021–2031*의 일환으로 발표된 시범 운영 프로그램으로, 개별 옹호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헬프라인은 Advocacy Law Alliance에서 제공하고 Disability Gateway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전화 기반 서비스입니다. 헬프라인은 단기간의 개별 장애 옹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가족 및 간병인을 위한 무료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옹호 단체 찾기(Disability Advocacy Finder):**

전국 장애인 옹호 프로그램(National Disability Advocacy Program)은 장애인이 효과적인 옹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호주 전역의 59개 옹호 단체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Ask Izzy 웹사이트의 Disability Advocacy Finder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askizzy.org.au/disability-advocacy-finder](http://www.askizzy.org.au/disability/advocacy-finder).

**Lifeline 위기 지원: 전화 13 11 14, 문자 0477 13 11 14**

Lifeline은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호주인에게 24시간 위기 지원 및 자살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자선 단체입니다.

**Beyond Blue 지원 서비스: 1300 224 636**

Beyond Blue는 우울증, 불안 또는 기타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온라인 및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원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숙련된 정신 건강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Beyond Blue는 또한 가까운 정신 건강 서비스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머리말

장애인 폭력, 학대, 방치 및 착취에 관한 왕립 위원회(Disability Royal Commission) 조사에 대한 호주 정부의 대응 요약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체 대응 문서는 [www.dss.gov.au/DRC-Aus-Gov-Response](http://www.dss.gov.au/DRC-Aus-Gov-Respons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립장애위원회(Disability Royal Commission) 조사는 장애인들의 경험을 묻는 호주 최대 규모의 조사였습니다. 이 조사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피해, 배제,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는 더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호주인이 장애, 성별, 연령, 인종, 문화, 종교 또는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왕립장애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는 222개의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애인이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인권이 보호되며, 개인이 존엄성, 평등 및 존중을 누리며 살고,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실현할 수 있는 포용적인 호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호주 정부는 이 비전을 지지합니다.**

호주 정부는 172개의 권고안에 대해 일차적 또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초기 대응에서 우리는:

* 130개의 권고안을 수락하거나 원칙적으로 수락하고,
* 36개의 추가 권고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 6개의 권고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최근에 종결된 문의 또는 협상과 관련하여 장애인, 주 및 테리토리 정부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몇 가지 권고안들이 있습니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미해결 권고안에 대한 대응을 계속 발표할 예정입니다.

왕립장애위원회 조사에 자신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신 **약 10,000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 친구, 대표자 및 간병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중요한 작업을 해주신 위원회 위원들과 왕립 위원회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대응 및 개혁을 위한 호주 정부의 협의 및 참여 과정에 기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분들의 기여는 이미 변화를 만들어냈으며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한 호주를 향한 국가적 변화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였으며 개혁 및 실행의 첫 번째 단계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 **안전:** 제한적 관행을 줄이고 없애기 위한 목표 개발; 품질 및 보호 조치의 통합; 장애인이 보호 메커니즘을 통해 일관된 지역사회 방문자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장애 여성과 소녀들의 안전 개선; 전국 장애인 학대 및 방치 핫라인(National Disability Abuse and Neglect Hotline) 지속.
* **권리 및 차별 금지:**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더 잘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장애인 옹호 프로그램 구축; *장애인 차별 금지법 1992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검토 및 현대화 시작; 장애 아동을 위해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이주 건강 요건 개정; 그리고 호주 인권 프레임워크 (Australia's Human Rights Framework)에 대한 의회 인권 합동 위원회 조사 (Parliamentary 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 Inquiry)의 최종 보고서와 함께 왕립 위원회(Royal Commission)가 권고한 장애인 권리법(Disability Rights Act)의 추가 검토.
* **포용 및 접근:** *호주 장애 전략 2021-2031* 검토; 호주 수어(Auslan)를 포함한 접근 가능한 정보 및 통신에 대한 국가적 접근 방식 개선; 원주민 장애 포럼 (First Nations Disability Forum) 또는 기타 적절한 공유 의사 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자문; 지적 장애인을 위한 1차 진료 강화 프로그램(Primary Care Enhancement Program) 지속; 장애 학생을 위한 성과 개선을 위해 주 및 테리토리 정부와 협력; 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없애고 지역사회의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풀뿌리 운동을 지원.
* **고용:** 더 많은 장애인이 취업을 준비하고, 적절한 일자리를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새로운 장애인 고용 전문 프로그램을 시행; 고용 서비스 제공자가 고품질의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우수 센터 (Disability Employment Centre for Excellence)를 설립; 지원 고용 부문의 발전을 위해 장애인, 그 가족, 대표자, 옹호자 및 서비스 공급자와 지속적으로 협력.

이는 왕립장애위원회 조사에 대한 [호주 정부 진행 상황 업데이트(Australian Government Progress Update on the Disability Royal Commission)](https://www.dss.gov.au/disability-and-carers-disability-royal-commission-taskforce/australian-government-progress-update-on-the-disability-royal-commission-0)에서 확인된 기존 작업과 국가 장애 보험 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의 정상화, 추가적인 기초 지원 구축, *호주 장애 전략 2021-2031*에 따른 성과 개선, 주류 환경에서 장애인을 위한 포용 및 접근성에 대한 접근 방식 개선, 국가 장애 데이터 자산(National Disability Data Asset) 및 국가 장애 연구 파트너십(Disability Research Partnership)을 통한 데이터 및 연구 개선을 위한 투자를 기반으로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포용적인 호주를 향한 우리 공동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의미 있는 변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커뮤니티와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만다 리쉬워스 하원의원 (The Hon Amanda Rishworth MP)**

사회복지부 장관

## 대응 요약

호주 정부는:

* **172개 권고안**에 대해 기본 또는 공동 책임이 있으며
* **130개 권고안**을 수락하거나 원칙적으로 수락하고
* **36개 권고안**을 추가로 고려하고 있으며,
* **6개 권고안**을주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한 호주를 지원하기 위한 기존 자금 지원 및 약속에 기반하여, 호주 정부는 왕립장애위원회(Disability Royal Commission) 조사에 대한 대응의 첫 번째 단계에 다음과 같은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3,970만 달러를 새로운 장애인 옹호 프로그램 구축에 투입 | 690만 달러를 장애인 차별 금지법 검토 및 현대화에 투입 | 2,330만 달러를 장애인 고용 우수 센터 설립에 투입 |
| 120만 달러를 제한적인 관행을 줄이고 없애기 위한 목표 개발에 투입 | 440만 달러를 보호 메커니즘 역할을 할 커뮤니티 방문자 계획에 대한 일관된 접근 방식에 투입 | 1,560만 달러를 국가 장애 품질과 보호 체계 통합에 투입 |
| 1,230만 달러를 오슬란(Auslan)을 포함한 접근 가능한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국가적 접근 방식 개선에 투입 | 1,210만 달러를 장애 아동을 위해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이주 건강 요건(Migration Health Requirement) 개정에 투입 |
| 2억 2,760만 달러를 새로운 장애인 전문 고용 프로그램 시행에 투입 | 260만 달러를 전국 장애인 학대 및 방치 핫라인과 불만 해결 및 의뢰 서비스 (Complaints Resolution and Referral Service)의 지속적인 제공에 투입 | 200만 달러를 장애 여성과 소녀의 안전 개선을 위해 투입 |
| 370만 달러를 지적 장애인을 위한 1차 진료 강화 프로그램(Primary Care Enhancement Program) 지속에 투입 | 1,960만 달러를 장애에 대한 지역사회 태도 개선을 위한 풀뿌리 운동 지원에 투입 |

이는 **보다 포용적인 호주를 만들기 위해 과거 세 차례 예산안에 걸쳐 투입된 총 30억 달러가 넘는** 큰 투자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가장애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상당한 투자와 조치, 지원 고용 부문의 발전을 위한 2023-24년 예산에 5,700만 달러, 국가 장애 데이터 자산의 분석, 연구 및 제공을 위한 2022-23년 10월 예산에 6,830만 달러, NDIS 외부 장애인을 위한 품질 및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장애인 서비스 및 포용법 2023 (Disability Services and Inclusion Act 2023)* 제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호주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협의 및 참여

호주 정부는 왕립장애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및 권고안에 대한 응답으로 개혁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장관급 및 연방 왕립장애위원회 대책반(Commonwealth Disability Royal Commission Taskforce, 이하 '대책반')을 통해 장애인, 가족, 간병인, 대표 기관, 서비스 제공자, 노조 및 광범위한 커뮤니티와 협의하고 소통했습니다.

**협의 대상**

모든 사람이 왕립장애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제시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장애인, 그 가족, 그리고 간병인,
* 옹호자 및 대표 기관들,
* 장애인 지원 제공자, 노동 조합 및 근로자, 그리고
* 주요 기관, 학계 및 기타 기관.

호주 정부는 또한 장애인 대표 기구(Disability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주요 기관 및 기타 기관들이 자체 회원 네트워크 내에서 많은 독립적인 참여 및 협의를 수행하고 '대책반'에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저희는 커뮤니티에 더 폭넓게 도달하고, 더 많은 목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협의 방법**

장애인 대표 단체 및 주요 기관과의 초기 소통은 기존 자문 포럼을 통해 수행되어 권장 사항에 대한 그들의 견해의 뉘앙스를 파악하고 이해하며 컨설팅 접근 방식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대책반(Taskforce)' 대표들은 또한 왕립장애위원회 조사에 대한 공개 제출물, 논평 및 포럼에 대한 광범위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수행했으며, 왕립장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장애인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많은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아울러 호주 장애 자문 위원회(Disability Advisory Council)를 포함한 다양한 자문 위원회와 수많은 자문 및 관할권 간 포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또한 고위급 원탁회의, 포럼, 워크숍 및 개별 회의를 통해 이해 관계자 및 지역사회와 소통했습니다.

DSS 웹사이트의 DSS Engage 페이지는 '대책반(Taskforce)'의 주요 대민 참여 창구였습니다. DSS Engage는 왕립장애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가동되었으며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활성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일반 대중은 DSS Engage 페이지를 통해 최신 소식을 구독하여 이해 관계자 협의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공개 협의

2023년 11월 28일 온라인 설문지 및 제출 절차를 통해 공개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설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권고안을 최대 3개까지 선택하고, 지지하지 않는 권고안을 최대 3개까지 선택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또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 입력란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에게는 협의 과정에 자신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되었습니다.

공개 협의는 2024년 1월 19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개인과 조직으로부터 335건의 설문지 응답과 118건의 서면 제출을 받았습니다.

모든 설문지 응답과 서면 제출은 분석되어 응답의 주요 주제를 요약한 비식별 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www.engage.dss.gov.au/drcausgovresponse/public-consultation-report](http://www.engage.dss.gov.au/drcausgovresponse/public-consultation-repor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 내용**

공개 협의 결과, 왕립장애위원회(Disability Royal Commission)의 권고안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은 왕립 위원회의 권고안이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장애인들이 권고안 실행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많은 권고안이 폭넓은 지지를 받았지만, 특히 특수/분리 교육, 고용 및 주거와 관련된 일부 권고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었습니다. 특수/분리 교육, 고용, 주거 환경의 미래에 대해 왕립장애위원회 위원들과 같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모든 이해 관계자들은 주류 교육, 고용 및 주거 환경 전반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과 포용성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주 및 테리토리 정부와 협력**

2023년 11월 3일, 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를 담당하는 연방, 주 및 테러토리 장관으로 구성된 장애인 개혁 장관 위원회(Disability Reform Ministerial Council)는 모든 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인 호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개혁을 진전시키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왕립장애위원회 조사가 강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 및 지역 사회 전반을 포함하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왕립장애위원회 조사에 대한 호주, 주 및 테리토리 공동 대응(Joint Australian, State and Territory Response to the Disability Royal Commission)은 사회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dss.gov.au/DRC-Joint-Respons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왕립장애위원회 조사에 대응하여 국가적으로 조율된 변화를 구현하기 위한 강력한 협력적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 장애 개혁에 대한 호주 정부 정책 성명

호주 정부는 호주를 보다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안전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개혁을 시행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애인 커뮤니티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왕립장애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는 광범위한 권고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대응책은 보호를 강화하고, 포용과 접근성을 증진하며, 인권 수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고, 장애가 있는 원주민의 독특한 관점과 경험을 인정합니다. 개혁 활동 프로그램은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장애인의 지속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건강, 교육 및 주거 분야의 주류 시스템 개혁 뿐만 아니라 장애 생태계의 광범위한 개혁과 연계될 것입니다.

포용적인 호주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구현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왕립장애위원회 조사에 대한 대응으로 호주 정부의 장애 개혁 의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핵심 원칙**입니다.

호주 정부는 왕립장애위원회 조사가 제시한 호주 지역사회에 대한 비전을 실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다음과 같은 사회를 의미합니다.

* 장애인이 폭력, 학대, 방치, 착취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회,
*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 그리고
* 개인이 존엄성, 평등, 존중을 누리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이는 장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함께 하는 다음과 같은 미래를 포함합니다.

* 안전하고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함께 생활하고, 배우고, 일하고, 놀고, 창작하고, 소통하는 미래,
* 선택권, 독립성,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존엄성을 갖는 미래,
* 자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지역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미래, 그리고
* 문화적으로 안전하며 가족, 지역 사회 및 동료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미래.

호주 정부는 장애인이 경험하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폭력, 학대 및 방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안전 장치, 독립적인 감독 및 불만 제기 체계를 강화할 것을 다짐합니다. 많은 경우, 이를 위해서는 주 및 테리토리 정부와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보호 및 서비스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장애인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장애인에게 보다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안전한 호주를 만들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설계, 실행 및 평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호주 정부는 여성과 어린이, 원주민, 문화 및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LGBTIQA+(성소수자), 고령 호주인을 포함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교차적이고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장애인이 존엄성을 지키며 평등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할 것을 다짐합니다.

호주 정부는 문화적으로 안전하고, 외상(트라우마) 관련 정보에 입각한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호주 공공 서비스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장애인이 소속감을 느끼고, 존중받고, 가치를 인정받고, 온전히 기여할 수 있는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주 장애 전략 2021-2031*은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국가 정책 기제로 남아있습니다.

## 투자 및 실행 개요

**안전**

장애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장치를 강화하며, 폭력, 학대, 방치 및 착취를 더 잘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왕립장애위원회(Disability Royal Commission) 조사 결과에 대한 호주 정부의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 1,560만 달러를 호주 전역의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서비스 품질과 보호 조치를 통합하기 위해 **품질 기준 및 보호 체계(Quality and Safeguarding Framework)와 장애 지원 생태계 보호 전략(Disability Support Ecosystem Safeguarding Strategy)**을 수립하기 위해 지원.
* 440만 달러를 보호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장애인이 일관된 **지역사회 방문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260만 달러를 **전국 장애인 학대 및 방치 핫라인(National Disability Abuse and Neglect Hotline)**과 **불만 해결 및 의뢰 서비스(Complaints Resolution and Referral Service)**를지속하기 위해 지원**.**
* 120만 달러를 NDIS 내에서 목표와 성과 지표를 수립하고 주 및 테리토리와의 공동 행동 계획을 개발함으로써 **제한적인 관행의 사용을 줄이고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접근법에 지원.
* 위해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NDIS 참가자를 더 잘 식별하고 포괄적이고 개별화된 대응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위험 프로필 모델(Risk Profile Model)**의 초기 설계.
* 50만 달러를 ***여성 및 아동 폭력 근절 국가 계획 2022-2032***의 **1차 실행 계획(First Action Plan)**에 장애인의 시각을 적용하여 실행 계획의 각 조치가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의 요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원.
* 25만 달러를 호주의 장애 여성과 소녀들이 **가족 폭력, 가정 폭력 및 성폭력 일선 서비스를 위한** **안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125만 달러를 성 건강, 존중하는 관계 및 동의 교육을 위한 **직장내 모범 사례 지침과 학습 리소스 및 도구**를 구현함으로써 여성, 소녀 및 성 소수자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Safer Girls Safer Women Project(더 안전한 소녀 더 안전한 여성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데 지원.

이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품질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존 작업과 투자를 기반으로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1억 6,070만 달러를 2024-25 예산안을 통해 지원하여, NDIS 품질 및 보호 위원회(Quality and Safeguards Commission)가 장애인을 학대, 폭력 및 방치로부터 보호하고, **데이터 및 규제 혁신 프로그램(Data and Regulatory Transformation Program)**을 통해 사기를 탐지하고 예방하는 능력을 혁신.
* 1억 4,260만 달러를 2023-24 예산안을 통해 지원**하여 NDIS 품질 및 보호 위원회(Quality and Safeguards Commission)가 NDIS 참가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 **NDIS 공급자 및 근로자 등록 대책반(NDIS Provider and Worker Registration Taskforce)**을 설립하여 NDIS 검토 최종 보고서에서 제안된 새로운 단계적 위험 비례 규제 모델의 설계 및 시행에 대한 조언을 제공.
* 2023년 4월에 새로운 국가장애보험청(NDIA)의 **참가자 보호 정책 및 실행 계획(Participant Safeguarding Policy and Implementation Plan)**의 발표.

**권리 및 차별 금지**

호주 정부는 왕립장애위원회의 조사 및 권고에 대한 권리 기반 접근 방식을 환영하며, 지속적인 법률 및 정책 개혁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 690만 달러를 **장애인 차별법 개혁**을 위해 지원하여, 장애인들과 협의하여 *장애인 차별 금지법 1992(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를 검토.
* 3,970만 달러의 추가 자금으로 **새로운 개인 장애 옹호 프로그램** 설립을 지원. 이 신규 프로그램은 기존 서비스들을 통합하여 지속적인 개별 장애 옹호 지원의 간소화되고 일관된 전달 모델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충족되지 않은 수요를 해결하고 가장 취약한 집단에 더 나은 지원 역량을 제공함으로써 피해 위험이 높은 장애인에게 더 좋은 성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장애인 옹호 체계(National Disability Advocacy Framework)에 따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작업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에 맞춰 조정될 것입니다.
* 1,210만 달러를 지원하여 호주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장애 아동에게 더 공정하게 **이주 건강 요건(Migration Health Requirement)을 개정**.

이러한 조치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이행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이미 진행 중인 작업을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 ***장애인 서비스 및 포용법 2023(Disability Services and Inclusion Act 2023)***의 제정은 NDIS 외부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품질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은 장애인과의 폭넓은 협의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인권 원칙을 그 안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 호주가 장애인의 형평성과 인권을 증진하는 데 있어 강력하고 일관된 글로벌 리더 역할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새로운 **국제 장애인 형평성 및 권리 전략(International Disability Equity and Rights Strategy)**의 개발.
* **호주 인권 체계에 대한 의회 인권 합동 위원회 조사(Parliamentary 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 Inquiry):** 2023년 3월, 법무부 장관인 마크 드레퓌스(Hon Mark Dreyfus) 하원의원은 호주의 인권 체계를 의회 인권 합동 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의회 인권 합동 위원회는 2024년 5월 30일에 [조사 보고서](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Committees/Joint/Human_Rights/HumanRightsFramework/Report)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호주 정부가 호주의 인권 체계(Australia’s Human Rights Framework)를 재수립하여 대폭 개선하고, 인권법( Human Rights Act)을 제정하고, 호주 인권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포함한 17가지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권리법(Disability Rights Act)과 국가장애위원회(National Disability Commission)를 설립하라는 왕립장애위원회의 권고안과 함께 이 권고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용 및 접근성**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하며 모든 장애인의 다양한 경험, 상황 및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호주 정부는 왕립장애위원회 조사에 대한 초기 대응을 통해 모든 생애 단계에서 장애인과 간병인의 다양하고 교차적인 경험을 인식하여 포용과 접근성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원주민들과 함께 주 및 테리토리 정부와 협력하여 **원주민 장애 포럼(First Nations Disability Forum)** 또는 격차 해소에 관한 국가 협약(National Agreement on Closing the Gap)에 따라 장애에 대한 전방위적 성과를 위한 기타 적절한 공동 의사 결정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 주 및 테리토리 정부, 호주 지방 정부 협회(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호주 장애 전략 자문 위원회(Australia’s Disability Strategy Advisory Council), 장애인, 그 가족 및 대표 기관들과 협력하여 왕립장애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응하여 국가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 동력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4년에 ***호주 장애 전략 2021-2031***을 재검토.
* 1,230만 달러를 정책 설계와 정부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실행, 지역 사회와의 일상적인 소통에 대한 접근성을 구축하기 위해 호주 공공 서비스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호주 장애 전략 2021-2031*에 따른 관련 계획의 수립을 포함하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높은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국가적 접근 방식**에 투자.
* 370만 달러를 **지적 장애인을 위한 1차 진료 강화 프로그램(Primary Care Enhancement Program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지속을 위해 투자하여 지적 장애인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지원.
* 1,960만 달러를 투자하여 **주요 전문 인력의 장애 대응력과 역량을 강화**하고장애에대한 **지역사회의 태도와 이해를 개선하기 위한 풀뿌리 운동**을 지원.
* 교육자, 학교 및 학교 시스템이 보다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장애 학생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 및 테리토리 정부와 협력.

이는 신체적, 신경학적, 신경발달적, 심리사회적, 감각적, 지적 및 인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을 지원하는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포괄적인 정책 및 노력을 보완합니다. 기존 작업의 내용은 왕립장애위원회의 권고안을 넘어서는 것이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곧 발표될 **항공 백서**를 통해 정부는 장애인의 항공 여행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고,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구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 **격차 해소에 관한 국가 협약(National Agreement on Closing the Gap, 이하 '국가 협약')과** ***호주 장애 전략 2021-2031***은 원주민 장애인을 위해 모든 수준의 정부 차원에서 요구되는 혁신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치를 설명하는 포괄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장애는 국가협약(National Agreement)에 따라 전방위적 성과로 인정됩니다. 두 프레임워크 모두 강점 기반 접근 방식에 기반을 둘 것입니다. 격차 해소에 관한 공동 위원회(Joint Council on Closing the Gap)가 승인한 **장애 부문 강화 계획(Disability Sector Strengthening Plan, DSSP)과 국가 장애 발자국(National Disability Footprint)**은 지역사회가 통제하는 장애 부문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 협약'에 따른 우선순위 개혁 2의 이행을 지원합니다.
* **NDIS 검토(NDIS Review)**에 대한 응답으로 2024년 1월에 발표된 추가 투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NDIS 안팎의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1,160만 달러를 지원하여 **기초 지원 전략(Foundational Supports Strategy)**을 개발하고 주, 테리토리 및 지역사회와 함께 추가적인 기초 지원을 설계.
  + 1억 1,810만 달러를 NDIS 예산을 사용하는 더 공정하고 효과적인 방법, NDIS 주거 생활 옵션 개선, 지원 서비스 이용 및 지불 방법 개선, 그리고 유아기 지원 모범 사례를 포함하여 **NDIS 검토의 주요 권고안에 대한 설계 및 협의**를 위해 지원.
* 호주의 어린이와 그 가족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는 **유아기 전략(Early Years Strategy)** 발표. 여기에는 장애와 같은 모든 형태의 다양성을 소중히 여기고 지원과 서비스가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전략에는 부모, 간병인 및 가족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조기 발달 지연 신호를 감지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유아기 지원에 대한 조기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고 장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호주에 거주하는 모든 자폐증 환자들의 삶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 자폐증 전략(National Autism Strategy)** 개발. 이는 자폐증이 있는 호주인과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조율된 국가적 접근 방식을 최초로 제공할 것입니다.
* **교육 분야**에서, 호주 정부는 2024년에 **약 37억 달러**를 제공하여 학교가 **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 자원 표준(Schooling Resource Standard) 통해 합리적인 조정 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한 보다 접근 가능하고 포용적인 학교 교육을 추진하고 장애 학생들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 개혁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학생, 학부모 및 간병인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교직원이 자신의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료를 제작합니다. 정부는 또한 **긍정적 파트너십 프로그램(Positive Partnerships Program)**을 통해 교직원이 자폐증과 관련된 기술과 이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고등 교육 장애 지원 프로그램(Higher Education Disability Support Program)**을 통해 대학이 장애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합니다.
* 약 265만 명의 호주인이 장애, 질병,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노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정부는 간병인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간병인 전략(National Carer Strategy)**의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2024-25 예산안에서 정부는 간병인 보조금(Carer Payment) 수혜자가 자신의 일, 학업 및 돌봄 책임을 관리하는 데 더 폭넓은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5년 동안 1,860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

호주 정부는 장애가 있는 노동 연령의 호주인들이 안전하고 포용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력 참여를 촉진하고 직장 내 차별을 근절해야 하며, 역동적이고 포용적인 노동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생태계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향후 4년 동안 정부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적합한 일자리를 위해 준비하고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55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2024-25 예산안에 발표된 추가 투자가 포함되며, 이는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 2억 2,760만 달러의 추가 자금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전문 장애인 고용 프로그램**을 시행. 이 신규 프로그램은 현재의 장애인 고용 서비스 프로그램을 대체하고 장애, 부상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 2,330만 달러를 투자하여 **장애인 고용 우수 센터(Disability Employment Centre of Excellence)**를 설립하여 서비스 공급자가 양질의 효과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고용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범 사례 및 증거 기반 정보를 확보.

이는 장애인의 고용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기존 조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 완전 고용, 생산성 향상 및 기회 균등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2년 9월에 개최된 **일자리 및 기술 대표자 회의(Jobs and Skills Summit)**에 이어 **고용 백서(Employment White Paper)**를 발표. 이 백서는 역동적이고 포용적인 노동 시장에 대한 정부의 비전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및 기술 대표자 회의에 이어 호주 비즈니스 위원회(Business Council of Australia)와 호주 장애인 네트워크(Australian Network on Disability)는 연방정부 및 4개의 대형 고용주와 협력하여 18개월 간의 **커리어 경로 시범 프로그램(Career Pathways Pilot)**을 제공했습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장애가 있는 직원이 직면할 수 있는 경력 발전의 장벽에 대해 경영진 전체의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장벽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제공했습니다. 총 330만 달러의 연방 정부 자금이 이 시범 프로그램에 할당되었습니다.
* 일자리 및 기술 대표자 회의의 또 다른 성과는 12개월 동안 **관광 지역 내비게이터 시범 사업(Tourism Local Navigators Pilot)**을 운영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330만 달러의 연방 기금을 배정한 것입니다. 이 시범 사업은 선정된 기관이 지역 내비게이터(Local Navigators)를 제공하도록 지원하여 장애인 구직자와 중소 관광 사업체 및 고용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구직자를 의미 있는 관광 일자리와 연결해주는 새로운 방법들을 확인했습니다. 지역 내비게이터는 직장 문화와 고용 관행을 개혁하는 동시에, 고용주들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 2023년 10월, 정부는 또한 간병인들이 노동 인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간병인 포용 직장 계획안(Carer Inclusive Workplace Initiative)**을 도입했습니다.
* **지원 고용 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2023-24년 예산안에 추가로 5,700만 달러를 투입. 지원 고용 서비스는 장애인의 유급 고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고용 서비스는 약 16,000명의 장애인이 고용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당 추가 예산은 지원이 많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그들이 더 폭넓은 고용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당 부문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직장에서의 권리와 선택권에 대한 자신감과 이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옹호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 NDIS 고용 지원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편되어 2024년 3월 20일에 발표된 NDIA **참가자 고용 전략 2024-26(Participant Employment Strategy 2024-26)**.
* 7억 700만 달러를 투입하여 2024년 하반기에 외딴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 일자리와 적절한 임금 및 환경을 제공하는 신규 **원격 일자리 및 경제 개발 프로그램(Remote Jobs and Economic Development Program)**을 제공. 이 프로그램은 원주민 주민들과 협력하여 개발되고 있으며 3년 동안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딴 지역 사회가 지역 프로젝트와 일자리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외딴 지역의 돌봄 및 지원 경제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을 지원할 것입니다.
* 2022년 11월, 정부는 **장애인 리더십 프로그램(Disability Leadership Program)**을 통해 호주 전역의 장애인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2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호주 기업 이사 협회(Australian Institute of Company Directors)를 통해 장애인이 이사회 직책을 맡는 데 필요한 리더십과 고위 경영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208명의 장애인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했으며 87%가 이를 통해 그들의 목표나 꿈을 달성했다고 보고했습니다.
* 2022년, 정부는 ***공정근로법 2009(Fair Work Act 2009)***를 개정하여 직원들이 유연 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유연 근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강제 집행이 가능한 권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장애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적격한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게 됩니다.

호주 공공 서비스 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는 **호주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장애인의 고용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주 공공 서비스 위원회는 호주 공공 서비스 전반에 걸쳐 관련 왕립장애위원회(Disability Royal Commission) 권고안들을 이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 권고안에 대한 입장

이 섹션에는 호주 정부의 주요 또는 공동 책임 범위 내의 172개 권고안에 대한 호주 정부의 입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및 테리토리 정부의 단독 책임에 속하는 50개 권고안에 대한 대응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고안의 기반이 된 자세한 응답들은 [www.dss.gov.au/DRC-Aus-Gov-Response](http://www.dss.gov.au/DRC-Aus-Gov-Response)를 통해 왕립장애위원회 조사에 대한 호주 정부의 대응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대응 언어 및 정의 | |
| 대응 입장 | **정의** |
| 수락 | 권고안을 완전히 수락 / 지지. |
| 원칙적으로 수락 | 중요한 정책 의도를 수락 / 지지하지만 실행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 메모 | 수락 또는 거부를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권고안에 사용되며, 해당 권고안이 호주 정부의 정책 책임 또는 권한 내에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음. |
| 추가 검토 필요 | 호주 정부가 아직 권고안을 고려 중임을 의미. 이는 관련 문의의 결과를 기다리거나 대응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한 추가 협의 및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

왕립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의 첫 번째 권고안은 권고안 4.1입니다. 따라서 답변은 권고안 4.1부터 시작됩니다.

|  |  |
| --- | --- |
| 제4권: 장애인의 인권 실현 | |
| 권고안 제목 | **호주 정부의 대응** |
| 4.1 – 4.22: 장애인 권리법 제정 | 추가 검토 필요 |
| 4.23 – 4.34: 장애인 차별 금지법 개정 | 원칙적으로 수락 |

| 제5권: 포용을 위한 운영 정책 | |
| --- | --- |
| 권고안 제목 | 호주 정부의 대응 |
| 5.1: 국가 장애 협약(National Disability Agreement) 개발 | 추가 검토 필요 |
| 5.2: 호주 장애 전략 검토 및 업데이트 | 수락 |
| 5.4: 국가 협약, 전략 및 계획 검토 | 원칙적으로 수락 |
| 5.5: 국가장애위원회(National Disability Commission)의 설립 | 추가 검토 필요 |
| 5.6: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관리 체계 | 메모 |
| 5.7: *CRPD*를 이행하기 위한 관할권 전반의 중점 사항 | 원칙적으로 수락 |

| 제6권: 자율성 및 접근성 강화 | |
| --- | --- |
| 권고안 제목 | 호주 정부의 대응 |
| 6.1: 접근 가능한 전국 커뮤니케이션 계획 | 원칙적으로 수락 |
| 6.2: 호주 수어(Auslan) 통역사 수 늘리기 | 원칙적으로 수락 |
| 6.3: 숙련되고 자격을 갖춘 통역사에 대한 접근성 | 원칙적으로 수락 |
| 6.6: 의사 결정 지원 원칙 | 원칙적으로 수락 |
| 6.19: 지원 및 대리인 선임에 대한 데이터 수집 | 원칙적으로 수락 |
| 6.20: 해석 선언(Interpretative declaration) | 추가 검토 필요 |
| 6.21 – 6.23: 옹호 활동 | 원칙적으로 수락 |
| 6.24 – 6.25: 인지 장애에 관한 보건 시스템 역량 | 원칙적으로 수락 |
| 6.26: 보건 인력 역량 개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보건 장관 회의(Health Ministers Meeting)의 역할 확대 | 원칙적으로 수락 |
| 6.27: 인증 기관에 의한 정기적인 진행 상황 보고 설정 | 6.27 (a) 및 (b): 원칙적으로 수락  6.27 (c): 수락 |
| 6.28: 장애인 의료 서비스에서 임상 배치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원칙적으로 수락 |
| 6.29: 인지 장애 의료 분야의 전문가 교육 및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향상 | 원칙적으로 수락 |
| 6.30: 국가 지적 장애 의료 우수 센터(National Centre of Excellence in Intellectual Disability Health)의 범위 확대 | 메모 |
| 6.31: 주요 정책 수단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권을 포함 | 6.31a - 수락  6.31b – 원칙적으로 수락 |
| 6.32: 지침 개선, 자금 지원 및 접근 가능한 정보를 통해 지원 및 조정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원칙적으로 수락 |
| 6.34: 장애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 검색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의료 내비게이터 도입 | 원칙적으로 수락 |
| 6.37: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공개 보고 | 수락 |
| 6.38: 제한적 관행을 줄이고 제거하는 것에 대한 증거 기반 강화 | 원칙적으로 수락 |
| 6.39 – 6.40: 제한적 관행 | 원칙적으로 수락 |
| 6.41: 비치료적 불임시술의 법적 금지 | 추가 검토 필요 |

| 제7권: 포용적 교육, 고용 및 주거 | |
| --- | --- |
| 권고안 제목 | 호주 정부의 대응 |
| 7.2, 7.3, 7.6, 7.13: 포용적 교육 | 원칙적으로 수락 |
| 7.8, 7:10: 교육 인력 역량 및 불만 관리 | 원칙적으로 수락 |
| 7.9, 7.12: 교육 데이터, 증거 및 자금 지원 | 원칙적으로 수락 |
| 7.14 – 7.15: 비주류 또는 분리 교육의 단계적 폐지 | 메모 |
| 7.16: 새로운 장애인 고용 서비스 모델에 포함하기 위한 우선순위 | 수락 |
| 7.17: 장애인 고용 서비스 직원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자원 개발 | 수락 |
| 7.18 – 7.23: 공공 부문의 장애인 고용 | 원칙적으로 수락 |
| 7.24: 장애인 고용 권리 위원회(Disability Employment Rights Council) 소집 | 메모 |
| 7.25: *공정근로법 2009(Fair Work Act 2009)* (Cth) 개정 | 원칙적으로 수락 |
| 7.26: *장애인 차별 금지법 1992* (Cth) *개정* | 원칙적으로 수락 |
| 7.27: 공정 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추천 메커니즘 활성화 | 수락 |
| 7.28: 임금 및 장애인 지원 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에 대한 정보 개선 | 수락 |
| 7.29: NDIS 참가자 고용 전략에 '열린 고용 우선(open employment first)' 접근법을 포함 | 수락 |
| 7.30: 포용적 고용으로의 전환 지원 | 원칙적으로 수락 |
| 7.31: 최저 임금 미만의 급여 인상 | 추가 검토 필요 |
| 7.32: 2034년까지 분리 고용 종식 | 추가 검토 필요 |
| 7.33: 전국 주택 및 노숙자에 대한 주요 접근 방식에서 장애인을 우선시 | 원칙적으로 수락 |
| 7.34: 호주 장애 전략에 노숙자 문제를 포함 | 수락 |
| 7.39: 장애인이 서비스 또는 시설 환경에서 이동할 때 노숙자 발생 방지 | 원칙적으로 수락 |
| 7.40: 전국 주택 및 노숙자 계획(National Housing and Homelessness Plan)에서 장애인을 위한 노숙자 문제 해결 | 추가 검토 필요 |
| 7.41: 그룹홈 개혁 | 원칙적으로 수락 |
| 7.42: 대체 주택 옵션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원칙적으로 수락 |
| 7.43 – 7.44: 그룹홈 개혁 | 추가 검토 필요 |

| 제8권: 형사 사법 및 장애인 | |
| --- | --- |
| 권고안 제목 | 호주 정부의 대응 |
| 8.2: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OPCAT) 모니터링에서의 장애 인식 | 원칙적으로 수락 |
| 8.11: 법원 및 법조인을 위한 정보 | 원칙적으로 수락 |
| 8.12: 국가 원칙의 이행 | 원칙적으로 수락 |
| 8.13: 법의학 시스템에 의해 구금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 | 원칙적으로 수락 |
| 8.17: 사법 제도에 관한 NDIS 적용 원칙 및 지원 표 | 추가 검토 필요 |
| 8.18: NDIA가 자금을 지원하는 전환 지원의 시기 | 수락 |
| 8.19: 경찰의 '서비스' 제공을 다루기 위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 1992* (Cth) 개정 | 원칙적으로 수락 |
| 8.20: 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대응 개선 | 원칙적으로 수락 |
| 8.23: 장애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실천 계획 | 원칙적으로 수락 |
| 8.24: 장애인을 포괄하는 가족 및 가정 폭력에 대한 정의 | 원칙적으로 수락 |

| 제9권: 원주민 장애인 | |
| --- | --- |
| 권고안 제목 | 호주 정부의 대응 |
| 9.4: 지역사회 연결(community connector) 프로그램 확장 | 수락 |
| 9.5: 지역사회가 통제하는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 차단 | 원칙적으로 수락 |
| 9.6: 국가장애보험기구(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gency Board) | 원칙적으로 수락 |
| 9.7: 문화 생활 참여 | 원칙적으로 수락 |
| 9.8 – 9.9: NDIS 귀향, 가족 지원 정책 및 자금 지원 | 원칙적으로 수락 |
| 9.10: 원주민 장애 포럼(First Nations Disability Forum) | 원칙적으로 수락 |
| 9.11: 장애 부문 강화 계획(Disability Sector Strengthening Plan)에 기반한 구축 | 원칙적으로 수락 |
| 9.12: 장애인 포용적 문화 안전 표준 | 원칙적으로 수락 |
| 9.13: 원격 인력 개발 | 원칙적으로 수락 |

| 제10권: 장애 서비스 | |
| --- | --- |
| 권고안 제목 | 호주 정부의 대응 |
| 10.1: 인권 내재화 | 원칙적으로 수락 |
| 10.2: 독립적인 지원 조정 | 원칙적으로 수락 |
| 10.3: 적절한 지원 조정 | 수락 |
| 10.4: 지원 조정 품질 | 원칙적으로 수락 |
| 10.5: 옹호 활동 | 원칙적으로 수락 |
| 10.6 - 10.7: 장애인 서비스 기관의 의사 결정 지원 | 원칙적으로 수락 |
| 10.8: 전국 장애인 활동 지원사 등록 제도 | 추가 검토 필요 |
| 10.9: 사회, 지역사회, 가정 간호 및 장애인 서비스 산업 근로기준서 | 메모 |
| 10.10: 비상시 긴급 지원 제공자 | 원칙적으로 수락 |
| 10.11: 신고 대상 사건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내부 절차. | 원칙적으로 수락 |
| 10.12: 유형 또는 종류 결정에 대한 소개 | 원칙적으로 수락 |
| 10.13: 독립 조사자 패널 만들기 | 원칙적으로 수락 |
| 10.14: 모델 정책 및 절차 개발 | 원칙적으로 수락 |
| 10.15: 불만처리 및 조사 실무 지침 | 원칙적으로 수락 |
| 10.16: 시정 조치 고려 요건 | 원칙적으로 수락 |
| 10.17: 보호 지표 및 전문 지식에 대한 접근성 | 원칙적으로 수락 |
| 10.18: 불만 처리 절차 및 응답 개선 | 원칙적으로 수락 |
| 10.19: 특정 불만 사항 조사 요건 | 원칙적으로 수락 |
| 10.20: 불만 제기 절차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수락 |
| 10.21: 등록 및 감사 절차 | 원칙적으로 수락 |
| 10.22: 강화된 규제 요건 | 원칙적으로 수락 |
| 10.23: 미등록 공급자 시장에 대한 데이터 게시 | 수락 |
| 10.24: 행동 지원 전문가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원칙적으로 수락 |
| 10.25: 모니터링, 규정 준수 및 집행 강화 | 원칙적으로 수락 |
| 10.26: 데이터 보고 및 게시 확장 | 원칙적으로 수락 |
| 10.27: 정보(intelligence) 역량 강화 | 원칙적으로 수락 |
| 10.28: 지정된 기관 간의 정보 공유 | 원칙적으로 수락 |
| 10.29: 원주민 기관(First Nations Unit) 수립 | 원칙적으로 수락 |
| 10.30: 참여 및 역량 강화 활동 | 원칙적으로 수락 |
| 10.31 – 10.33: 근로자 선별 검사 | 원칙적으로 수락 |

| 제11권: 독립적인 감독 및 불만 제기 체계 | |
| --- | --- |
| 권고안 제목 | 호주 정부의 대응 |
| 11.1 -11.2: 성인 보호 | 추가 검토 필요 |
| 11.4: 접근 가능한 불만 제기 경로 만들기 | 원칙적으로 수락 |
| 11.5: 불만 처리 및 조사 실무 지침 | 원칙적으로 수락 |
| 11.6: OPCAT의 주요 조항을 법률에 명시 | 원칙적으로 수락 |
| 11.7: 구금 장소의 자원 및 광범위한 정의 | 원칙적으로 수락 |
| 11.10: 일관성 및 조율 개선 | 원칙적으로 수락 |
| 11.11: OPCAT 구현을 위한 장애인 포용적 접근 방식 | 원칙적으로 수락 |
| 11.12 – 11.13: 커뮤니티 방문자 제도(Community Visitor Schemes) | 원칙적으로 수락 |
| 11.16: 장애인 사망 검토에 대한 국가 협약 | 추가 검토 필요 |
| 11.18: 신고 대상 행위 및 사건에 대한 이중 감독 | 원칙적으로 수락 |

| 제12권: 왕립위원회 권고안 외의 활동 | |
| --- | --- |
| 권고안 제목 | 호주 정부의 대응 |
| 12.1: 최종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대응 | 원칙적으로 수락 |
| 12.2: 최종 보고서 권고안의 이행 | 원칙적으로 수락 |
| 12.3: 권고안 이행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 | 원칙적으로 수락 |
| 12.4: 성과 개선의 효과성 평가 | 원칙적으로 수락 |
| 12.5: 데이터 수집에 대한 국가적으로 일관된 접근 방식 | 원칙적으로 수락 |
| 12.6: 주류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수집에서 장애인 표식 | 원칙적으로 수락 |
| 12.7: 장애 데이터 수집 개선 | 원칙적으로 수락 |
| 12.8: 국가 장애 데이터 자산에 대한 장기 지원 | 원칙적으로 수락 |